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58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4. 13.	회부연월일	2022. 4. 13.

1. 제안이유

-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과 논산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,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 중 사전 교육(4시간) 이수 규정을 폐지함.(안 제9조)
- 나. 위원 결원(미달, 해촉 등)으로 인해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명시함(안 제9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 개정안은 논산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자격과 임기 등에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